#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0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성일종·강선영·인요한

장동혁 • 고동진 • 김승수

이달희 · 최수진 · 송석준

김상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 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 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	
敎授要員)을 둔다. <후단 신	<u>이 경우 임상</u>
<u>설&gt;</u>	교수요원으로서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
	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
	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⑤
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